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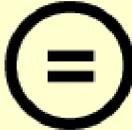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多文化家庭을 위한 佛教社會福祉
支援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徐 丙 鎮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佛教社會福祉學科

朴 善 起

2010

碩士學位論文

多文化家庭을 위한 佛教社會福祉
支援方案에 관한 研究

朴 善 起

指導教授 徐 丙 鎮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5月 日

朴善起의 社會福祉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10年 6月 日

委員長_____ 印

委 員_____ 印

委 員_____ 印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5
II. 이론적 배경	8
1. 다문화가정의 이해	8
1) 다문화사회	8
(1) 다문화사회의 정의	8
(2) 다문화사회 정책의 유형	11
2) 다문화가정	13
(1) 다문화가정의 정의	13
(2) 다문화가족의 변화	15
2. 불교사회복지 실천의 이해	18
1) 불교사회복지의 이해	18
2) 불교사회복지의 실천	20
(1) 자비	20
(2) 생명존중	21
(3) 보시와 이타주의	22
(4) 복전사상	24
III. 결혼이주민가정 현황과 문제점	25
1. 국제결혼 현황	25
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27

2) 배우자의 선택과정 및 결혼과정	30
3) 결혼이주민가족의 문제	31
(1) 부부관계 문제	32
(2) 자녀양육 문제	36
(3) 경제적 문제	37
(4) 가정해체의 문제	37
2. 결혼이주민여성의 위기	44
1)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44
2) 사회제도권의 문제	47
3.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사업 현황	48
1) 정부시책 및 관련법제 현황	48
2) 다문화가정지원 법제 및 지원기관	53
3) 다문화가정의 사회보장	55
IV.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한 불교사회복지 실천방안	68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단의 이해와 지원	68
2. 다문화가정에 대한 불교단체의 교육·홍보강화	69
3. 불교관련 복지시설 및 사업체의 캠페인 공조	70
4. 사찰복지자원의 적극적 개발 및 활용	71
V. 결론 및 제언	75
참고문헌	79
ABSTRACT	86

표 목 차

<표2-1>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18
<표2-2> 주요국가별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19
<표2-3> 종교조직의 복지활동의 유형화	20
<표3-1> 국제결혼추이	29
<표3-2>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적별 혼인	31
<표3-3> 국적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 현황	32
<표3-4>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 건수 및 구성비	41
<표3-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42
<표3-6>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및 구성비	44
<표3-7>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평균 동거 기간	45
<표3-8> 동거 기간이 0-4년인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구성비	45
<표3-9> 이혼 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46
<표4-1> 2009년도 최저생계비	61
<표4-2> 2009년 주거급여한도액 및 현물급여 기준액	61
<표4-3>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교육비 지원	69
<표4-4>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원수별 선정기준액	70

도표 목차

<도표3-1> 부부 갈등 요인	37
<도표3-2>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추이	43

그림 목차

<그림4-1> 가구별 생계급여액 계산	61
<그림4-2>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62
<그림4-3>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66
<그림4-4> 자활근로 사업 신청 방법	68

국문초록

21세기 현재 사람들은 ‘지구촌 가족’이란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국가간 이동, 이주가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소위 순혈주의(純血主義) 단일민족의 신화에 자부심을 갖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90년대를 변환기로 다인종,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였으며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발표한 『2005년 국제이주보고서』는 한국에 약 2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합법·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법무부에서는 2007년 8월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 1,000,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0년 3월 체류 외국인은 합법, 불법을 포함하여 총 1,180,598명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는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린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정불화와 그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 이들의 가정적·사회적인 문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상황은 단순히 이들 개인 또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및 사회적인 책임도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정의 파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음이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

한국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극소수의 스님이나 불교사회복지관련 기관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한국사찰이나 불교사회복지관련 조직들은 아직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흔히들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이라는 문구에 잘 함축되어 있다고 한다.

상구보리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고 수행하는 것이며, 하화중생이란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일을 말한다. 붓다의 가

장 큰 관심이 고통 받는 중생의 구제이고, 중생의 구제야말로 곧 ‘깨달음’(buddhi)이라는 이치였다고 보고 있다.

깨달음과 중생구제, 그 어느 쪽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인가 실천의 종교인가에 대한 입장은 종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출가자인가 재가자인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차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적어도 붓다의 가르침은 극히 실천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법을 실천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불교의 제종단이 사회복지라는 자비행(慈悲行)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할 원력을 내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그 한계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불교사회복지의 실천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불교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인간의 신분과 출신에 대한 계급과 구분을 부정하고, 사람뿐만이 아닌 전체 유정(有情)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모든 세상의 존재가 연기법(緣起法)에 의해 형성되어있다는 철학을 공유한 사회복지서비스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오늘날 지구촌은 국가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세계는 ‘이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단일민족국가로 여겨져 왔던 대한민국이 현재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다. 미국 슈퍼볼에서 MVP(most valuable player)로 선정된 하인즈워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험난했던 인생역정과 감동적인 성공 드라마가 언론매체를 통해 경쟁적으로 보도되었고, 곧바로 ‘다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유행어가 되었고, 혼혈인 차별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은 약 89만 1천여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2006년의 53만 6천여명 그리고 2007년의 72만여명과 비교해 볼 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수는 2002년 3만 4천여명에서 2008년 5월 현재 14만 4천여명으로 6년 사이에 약 4.2배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08).¹⁾

하지만,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작된 산업연수생 제도, 그리고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결혼 이주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잠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또한 농촌과 도시의 근로현장 남성들의 결혼상대자로 거주하는 한민족이 되어가고 있다.

1) 행정안전부(2008) pp.2~3.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게 된 까닭은 외국인의 급속한 국내유입 때문이다. 외국인 유입의 첫째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그룹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남성들로서 1993년도에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유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7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한국사회에서 가정을 꾸미고 2세를 키우면서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가정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인데, 이들은 1990년 중반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촌청년 장가보내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중국(교포 포함)이나 동남아시아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한국사회에 유입되었다. 한국사회에의 외국인 유입현상은 세계화시대에서의 인적교류의 가속화,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이행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 그리고 한국인의 3D 업종의 회피현상이 멈추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국제결혼 증가율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추세로 비추어볼 때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에는 인구의 5% 정도가 될 것이며 특히 20세 이하 연령층에서 5명중 1명을 다문화가정 자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논의와 활동이 한국사회의 각 영역에서 쏟아져 나왔다. 다문화에 관한 관심은 처음에는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현상에서 등장했다. 뒤이어 여성계, 노동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문화현상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각 시·도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지원하는 각종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또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조선일보에서 한겨레신문까지 공영방송에서 인터넷 방송까지 특별기획 기사 및 특별방송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매스미디어의 관심과 캠페인의 와중에서도 아직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충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 입안자들조차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고한 지원을 주기 어렵다.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도 이제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노동시장으로서의 유입은 제조업 부문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결혼이주여성들에 의해 농촌의 총각들의 결혼생활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한 다문화가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종차별과 빈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삶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육아와 교육, 그리고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는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린다.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정불화와 그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 이들의 가정적·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발생은 단순히 이들 개인 또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및 사회적인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제문제들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문제상황과 과정은 결혼이주여성 과 그 배우자인 남편과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2세들과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음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대다수의 한국사찰도 여전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찰이라 할지라도 그 대책이 한국어교육, 외국어법회 등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다문화가족을 불교사회복지의 틀 안에서 특히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이혼방지와 그 가족들의 지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다문화가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지지방안에 대해,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해체 방지에 대해 불교사회

복지의 측면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다문화가족의 배경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의 해체방지와 다문화가족 지원의 활성화를 불교사회복지의 실천방안을 통해 모색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의 피폐한 현실에 대한 성찰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적 기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이혼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정부시책과 법제, 지원체계 등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향후 다문화가족의 이혼방지를 위해 불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전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불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이혼방지를 위한 문제해결의 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최근 발간된 다문화가족 관련 문헌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문헌자료와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불교사회복지 관련 연구 역시 선학들의 저서와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진행 하였다.

3. 선행연구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초기 연구는 1970년대에 외국인들이 새로운 문화권이나 이민국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문화적응현상에 대한 연구로 시작 되었다. 더불어 다문화사회에 대한 외국인 정착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이 시(市) 또는 국가의 정책방안 수립과 관련된 내용 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 내 다문화주의와 이와 관련된 여러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김현미, 2005; 설동훈·한건수·이란주, 2003; 오경석 외, 2007; 장세훈·이유종, 2004; 한건수·설동훈, 2007). 특히 한국의 다문화주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논의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오경석 외, 2007)은 안산의 외국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대한 경험적 자료와 여러 이론을 수렴한 연구이며, 외국인집중거주지역에 관한 국내 연구는 외국인집중거주지의 역사적 형성과정(이현중, 1967, 1968), 특히 화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남지숙, 1987; 이재정, 1993; 조희정, 1986)들과 함께 외국인들의 거주실태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제나 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 다국적기업의 한국유치를 위한 외국인 임직원의 한국 생활 정착보조를 위한 연구,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주거 문제,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 <외국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서울특별시, 2006), <서울거주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 환경과 향후 개선방안 연구>(조권중, 2002), <서울시 외국인 전용 주거 단지 건립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은 주로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의 한국 유치를 위해 그들이 한국행을 꺼리는 주요 이유로 꼽는 한국 내 거주 여건, 자녀교육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들이며,

한국적 다문화사회에 대해서는 큰 시사점을 주지 못했다.

1990년대 세계화 시대의 활발한 인적교류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와 농촌지역의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으로 인해 이주해 오는 외국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한국어 사용능력이라든가 문화의 차이 등을 연구한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양옥경, 2007)등이 있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에 주로 살고 있다는 기존의 가설과는 달리 외국인 인구가 집중된 서울지역에 결혼이주여성의 약 30%가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현미(2005)는 국제이주노동자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여성노동자(연예인 포함)와 결혼이주여성이 글로벌시대의 한국의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2010년 5월 국회도서관의 다문화가족의 학술논문을 검색해보면 75건의 석·박사 논문이 검색된다. 대부분이 자녀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김진아, 2010)와 국제결혼의 결혼만족도와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논문(정한나, 2009; 이병기, 2008)도 있으며 불교계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에 관한 연구(김응화, 2009)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문제와 그들의 가정해체, 그 2세들의 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이 발행되는 것이 사실임에도, 2008년 11월의 호남지역 다문화센터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김경아 호남대 다문화센터 소장이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2,134명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조사한 결과 47%가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46.6%가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자녀문제'(66.9%), '밖힐 수 없는 이유'(13%), '이혼 후 경제적 자립 문제'(4.9%) 등의 이유로 '이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삶의 만족도에는 전체의 54.5%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 남편과의 갈등유형은 ‘생활비 또는 용돈 문제’(14.3%), ‘폭언과 모욕적인 말’(12.2%), ‘외출통제’(9.6%), ‘본국송금 통제’(6.5%), ‘신체적인 폭력’(5.6%), ‘의처증’(4.7%)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언어’(48%), ‘경제적 어려움’(25%), ‘한국문화 이해’(7%), ‘자녀교육문제’(6.8%), ‘취업문제’(5%)를 들었다.²⁾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직도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사회적인 편견과 인식의 부재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국제결혼이라는 허울아래 일어나는, 실질적 매매혼의 병폐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호남대 다문화센터의 연구발표와 함께 진행한 ‘2008 아시아 결혼이주 여성 포럼’에서는 참가한 연구진들이 한국 남성이 결혼중개 회사에 2만 달러 이상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상업적 국제결혼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러한 구조가 ‘위험을 부르고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21세 이하의 어린 신부들이 나이 많은 한국남성과 급히 결혼하면서 살해·자살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들의 긍정적인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해서는 결혼 후 국적취득이 가능해지는 2년 사이 이주여성들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배려가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신부나라 문화교육 과 한국어 교육 등의 다각적인 정착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 배명재 2008.11.08. 경향신문. 사회면.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의 이해

한국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늘어나는 거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 의해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이미 거주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는 한국사회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와 함께 더욱 빠르게 다인종, 다문화 사이로 접어들 것이다.³⁾ 그러나 한국사회는 ‘세계 속의 한국’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비해 그동안 형성되어온 ‘한국 속의 세계’는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한 단일민족의 신화가 지켜온 문화적 전통과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이해를 위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략적인 이론들과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보고 다문화가정의 형성과 그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1) 다문화사회

(1) 다문화사회의 정의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담론이 주도적으로 생성된 것은 사회복지계가 아닌 노동계였으며 그 이후 사회학계와 사회복지학계의 관심과 급속도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 정부적인 지원과 지역복지의 실천현장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주로 관련서적(김은미·양옥경·이해영, 2009)⁴⁾의 내용을 재인용하였으며, 다문화 관

3) 2010년 3월 체류 외국인은 합법, 불법을 포함하여 총 1,180,598명이다.

: <http://www.immigration.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2010년 3월호.

4) 김은미 외(2009) pp.32~33.

런 용어를 정의함에 다문화사회복지론⁵⁾을 참조 하였다.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경 없는 마을(The Borderless Village: TBV): 국경 없는 마을은 원래 안산시 원곡동을 가리키는 말이나 현재는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차별문화를 극복하고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어로도 통용되고 있다. 마을의 의미는 ‘공동체’이다. ‘동네’라는 말은 주로 여러 집이 이웃으로 살아가는 ‘주거의 물리적 범위’를 지칭한 반면 ‘마을’은 물리적 범위만을 뜻하지 않고 주로 이웃하여 사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종교, 직업, 취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또는 커뮤니케이션 그룹까지를 포괄하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마을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

(2) 국경 없는 시민권(Borderless Civil Right: BCR):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시민권(Civil Right)으로서 국경없는 시민권이란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체로서 인정받는 정착의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의 국제화된 지금의 시민권은 장기체류 이주노동자가 ‘체류’한다는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노동의 유연화(Flexibilization): 노동의 유연화 전략은 각 나라의 노사관계와 자본의 축적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적대적인 노사관계와 대량생산이 지배해온 미국은 외적, 양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해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이 구사되어지나, 이미 노동이 자본측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에 있거나 노동과정에서 노동이 유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에는 주로 내적, 질적인 노동과정의 유연성이 추구되어졌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로자 수의 증

5) 김범수 외(2008) pp.58~64.

감 또는 하청이나 외주가공 등 작업의 외주화를 통한 수량적 유연화 전략이 선호된다.

(4) 문화적 사고(Cultural Thinking): 문화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문화적 사고는 문화창조와 문화변혁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5) 에스닉(Ethnic): 두가지로 정의 되는 데 첫째는 특정 국가 내에 존재하면서 민족적 자립과 독립을 지향하고 있는 개별 인간집단을 지칭한다. 둘째로는 일반적인 인간 집단 내지 인종집단으로 번역한다.

(6) 지구사회 시민권(Global Society Civil Right): 시민권의 개념은 집단이나 계층에 주어지는 집합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개인과 정치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7) 지구촌 마을(Global Village & Global Cottage): 통신, TV,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최근에는 글로벌커티지(지구가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8) 글로컬(Glocal): 국제화,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 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보다 작은 지역단위에서 현지화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9) 혼종성(Hybridity): 이주민의 정체성은 혼종성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혼종성은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상호의존과 상호영향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우월적 사회와 열등적 사회, 지배적 국가와 피지배적 국가 등에 대한 상호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즉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역사,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단의 접촉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한국의 이주민의 정체성을 고찰할 때 한국사회의 구성원과 이주민과 연관된 상호접촉 혹은 상호침투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0) 다문화: 90년대 중후반 일부 지원단체에서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운동의 의제는 아니었다. 이런 다문화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여진 것은 2005년경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처우가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지원단체와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다문화’를 채택하였고, 2006년에는 정부, 학계, 이주노동진영을 망라하여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용어도 폭 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11) 다문화공생(多文化共生): 다문화공생이란 일본에서 서로 다른 인종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일본은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문화 가족은 한국처럼 가족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쓸수 있는 개념이라 보고 다문화 사회의 초창기에 쓰이는 단어로 보고 있다.

(12) 디아스포라(Diaspora): 원래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이방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켰던 용어이나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낯선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존재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다문화정책의 유형

설동훈(2005)은 한 사회에서 외국인의 정착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유형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⁶⁾

차별배제모형은 국가의 특정 경계영역에만 외국인(이민)을 받아들이고, 복지 및 여러 정치, 문화,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독일, 한국, 일본 등 단일민족을 강조해온 국가들이 이러한 모형을 채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동, 결혼 이민자들의 증대와 맞물려 차별배제모형은 점차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둘째, 동화모형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1960년대까지 미국의 ‘용광로[Melting Pot]정책’으로 프랑스가 이러한 모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본다. 즉 주류사회가 자국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정책이며, 주류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의 자녀를 정규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동화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다문화 모형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의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둔다. 다문화모형은 흔히 샐러드볼(salad bowl)에 비유되는데 이는 샐러드가 각기 다른 형태와 맛을 가진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모여 공통의 드레싱에 의해 공평하고 동등하게 뒤섞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표현으로 ‘인종적 모자이크(Ethnic Mosaic)’ 또는 ‘무지개연합(Rainbow Coalition)’이 사용되기도 한다. 인종적 모자이크란 이민자들이 출신국에 따른 특성을 간직하면서 전체 사회를 조화롭게 구성함을 뜻하며, 무지개연합이란 서로 다른 색들의 수평적 공존함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조화롭게 구성함을 빗댄 표현이다

이러한 다문화모형은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세분화할 수 있다.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

6) 설동훈(2005) pp.3~23.

고, 여러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다문화 모형이다. 이에 비해 보다 발달된 개념인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미국은 문화다원주의를 받아들여 주류문화에 대해 비교적 확고한 정책을 고수하며 소수 민족과 이민자들에게 포용적이지만 적극적으로 그들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이와는 달리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수민족과 이민자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초창기 차별배제모형에서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전이가 완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다문화가정

(1) 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정이란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그 밖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과 그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비차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오히려 국제결혼이란 용어가 법률적으로 더 많이 쓰이지만, 단순히 결혼 당사자만을 의미하고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가족 구성원을 모두 지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란 단어가 그 가족 내 구성원의 인종 간 차별성과 한 가정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더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을 일반적으로 혼혈가정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인종 사이에서 결합된 가정의 형태를 혼혈가정이라

고 불러 왔었다. 하지만 혼혈 가정의 자녀들 즉 2세대들에게는 상기 혼혈인에 대한 정의처럼 그 ‘혼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 내에서의 상징적 차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단어 자체 내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바꾸기 위해,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이주민(Immigrant):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면서 이주노동자 이외에 결혼이민자, 재중동포, 난민, 귀화자, 입양자, 국내출생 이주노동자 자녀 등이 급증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보면, 이들을 바로 시민권적 차원에서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2) 코시안(Kosian): 코시안은 ‘Korean + Asian’의 합성어인데 혼혈아 등의 차별적 언어를 해소하기 위해 안산이주민센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초기에는 국제가정의 2세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점차 한국에서 결혼한 이주 노동자의 자녀도 포함하여 부르고 있다.

(3) 혼혈인: 2003년 국가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혼혈인을 1,2,3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1세대 혼혈인은 초기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기간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군과 한국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회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호적에 등록되지도 못하였고 편견과 차별, 소외 등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2세대 혼혈인은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했다. 3세대 혼혈인은 1990년대 후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한국남성과 동남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4) 하프(Half): 일본에서 혼혈인을 호칭하는 용어이다. 최근에는 하프란 차별적인 용어이므로 더블이라는 용어를 권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5) 더블(Double): 일본에서 혼혈인을 호칭하는 용어이다. 하프란 용어를 사용하다 차별적인 용어라 보고 최근에는 더블이라는 용어를 권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2) 다문화 가족의 변화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족은 독립이전까지는 일본과 중국 등의 가까운 국가나 민족 사이에서 그리 혼하지 않게 형성되었고, 해방 후에는 주로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한 미군병사와 한국여성 그리고 그들 사이의 혼혈인 2세들로 형성된 가정이 대부분이었다.⁷⁾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들어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외국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결혼이 증가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아시아 여성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한국남성과 외국이주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결혼이주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인종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탈주민들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형성 중에 노동 이주민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와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서구 유럽국가가 외국노동력 유입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사회를 형성하는 경우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유럽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과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하였다.

다음의 <표2-1>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합법, 불법을 망라한) 외국인들의 수와 출신국가를 보여주고 있다.

7) 김범수의 공저(2007) p.84.

<표2-1>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⁸⁾

(2009.12.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	계	1,168,477	990,522	177,955
중	국 ⁹⁾	555,082	472,598	82,484
	한국계	377,560	352,404	25,156
미	국	122,659	118,602	4,057
베	트 남	90,931	76,267	14,664
일	본	47,718	47,095	623
필	리 핀	45,913	34,079	11,834
타	이	44,701	32,318	12,383
몽	골	30,674	18,404	12,270
인	도 네 시 아	29,859	24,904	4,955
타	이 완	27,062	26,171	891
우	즈 베 키 스 탄	21,249	14,158	7,091
캐	나 다	19,393	18,901	492
스	리 랑 카	15,506	13,414	2,092
방	글 라 테 시	10,863	4,518	6,345
파	키 스 탄	9,820	6,830	2,990
러	시 아	9,622	8,229	1,393
캄	보 디 아	9,204	8,229	975
네	팔	8,164	6,175	1,989
호	주	7,446	7,327	119
인	도	6,364	4,817	1,547
영	국	5,024	4,977	47
미	안 마	4,555	3,183	1,372
홍	콩	4,518	4,305	213
기	타	42,150	35,021	7,12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2009년 4분기)

8) <http://www.immigration.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9) 한국계 중국인 포함.

또한 <표2-2>가 나타내듯이 과거에는 미국인이나 중국 국적을 가진 연변 동포가 국내에 거주하는 수가 많았었다. 하지만 현재는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증가에 따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사람들과 몽골,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2-2> 주요국가별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¹⁰⁾

(단위 : 명, %)

국적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2월)
		중 국	282,030	382,237	503,427	556,517
미 국	103,029	108,091	112,268	117,986	122,659	
베 트 남	38,902	54,698	71,074	84,763	90,931	
필 리 핀	38,057	48,164	50,873	46,894	45,913	
타 이	34,188	43,307	47,813	45,198	44,701	
일 본	39,410	43,207	41,053	51,763	47,718	
몽 골	22,475	28,392	32,463	32,206	30,674	
타 이 완	25,121	25,864	27,040	26,977	27,062	
인 도 네 시 아	25,599	26,378	26,522	29,913	29,859	
우즈베키스탄	13,834	15,380	17,163	21,569	21,249	
캐 나 다	13,302	14,879	16,562	17,752	19,39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주요국가별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2009년 4분기)

10) <http://www.immigration.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2. 불교사회복지실천의 이해

1) 불교사회복지의 이해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이해는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며,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불교사회복지를 정의하느냐, 불교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른 대략 두 종류의 정의를 볼 수 있다. 박광준(2010)은 불교사회복지를 논하기 앞서 먼저 종교사회복지의 개념을 종교조직의 유형화로 구분하는데, 아는 이에 대한 조직화되지 않은 원조와 조직화되어있는 원조, 그리고 모르는 이에 대한 조직된 원조와 조직화되어있지 않은 원조로 종교사회복지의 유형을 나눈다.

<표2-3> 종교조직의 복지활동의 유형화¹¹⁾

원조자와 피원조자의 관계 어떤방식의 행위인가	개인적 유대가 있는 이	니트를 가진 모르는 이
비조직화된 행위	종교인들간의 사적인 상호부조	종교적 자선, 시혜
조직화된 행위	종교인의 상호회	종교사회복지

더불어 불교와 사회복지가 각각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한 부분으로서 그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두 영역이 합해져 불교사회복지를 불교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

11) 박광준(2010) p.204.

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불교사회복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란 학문적 영역 혹은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에서 다음의 세가지를 포함하는 활동이다.

첫째,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의 학문적 원리나 실천적 원리를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에 근거하여 조명하고 연구하는 것

둘째, 불교적 사회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셋째, 불교사상과 실천방법에 근거하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

한편 권경임(2009)은 불교사회복지와 일반사회복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교와 사회복지의 공통점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과 인간이 처한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일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이 고통의 속박에서 해탈하는데 목적을 두며 사회복지의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을 도모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불교사회복지의 불교를 주체로 하는 복지활동으로 불교정신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사회적 실천인 반면, 일반사회복지의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의 대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불교와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불교복지와 불교사회복지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데, 불교복지란 불교에 의한 복지사업, 시책, 제도의 이념이나 실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로 생각하는 것이 불교복지이다. 불교복지의 복지는 인류의 번영과 같은 인간이나 사회의 이상실현의 개념으로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실체 개념이 아니라 이념으로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목적개념이다 불교사회복지의 약간 의미를 달리하는데 복지와 사회복지의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나 복지는 초역사적 초사회적인 개념이지만,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회에서 규정되는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역사와 사회에서 규정되는 사회복지문제에 대응하는 민간사회복지사업으로 불교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사회복지이다.¹²⁾ 라고 세분을 하지만, 권경임 역시 불교사회복지의 개념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의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준거틀로 보느냐는 입장의 차이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불교사회복지란 종교사회복지이면서 동시에 민간복지로 규정하며, 정신과 물질, 주관과 객관의 이원적 사고를 극복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하여, 인간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공생관계를 이루는 데에 그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2) 불교사회복지의 실천

불교사회복지라 하여도 일반사회에서의 사회복지와 다를 수 없다. 이 절에서는 불교종단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소개하고 사업을 설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불교사회복지의 기반 사상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른 불교적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자비(慈悲)

자비는 불교의 핵심사상 중 하나이며 이런 자비심을 구체적으로 확대시킨 사무량심(四無量心)이 있다. 무량이란 부처와 보살의 자비심이 무량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량의 중생에게 무량의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慈), 비(悲), 희(喜), 사(捨)의 사무량심중 자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자 하는 마음, 여락(與樂)의 마음, 기쁨, 이익,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고, 비란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사람에게서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며, 희란 상대가 안락하고 행

12) 권경임(2000) pp.35-36.

복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보시에 기뻐하는 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사란 친소나 호불호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마음(捨心)을 말한다.¹³⁾

이러한 자비의 조직적 실천은 불교사회복지의 실천에서 그 기반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비행은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즉 상담이나 재가복지, 지역복지사업, 자원봉사 사업 등 적어도 사회복지 사업 전반에 걸쳐 프로그램에 임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며 특히 케이스매니지먼트(casemanagement)에서는 처음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불교사회복지 실천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비의 실천은 조직적이고 체계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원조적 활동을 조정하여 진정으로 원조가 필요한 사람을 누락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복된 원조를 피하고자 함이다. 이것은 불교사회복지 뿐만이 아닌 종교사회복지의 합리적 체계화와 과학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필요한 이유가 되며 개인의 상호부조적인 복지활동이 아닌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운영되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2) 생명존중(生命尊重)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비정신의 기본이다.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고통 중에서도 죽음의 고통은 특별하며 살생은 중생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므로 자비실천의 대전제는 불살생(不殺生)이다. 부처는 보시로서 제공되는 육고기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동물을 제물로 삼는 데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것은 어떠한 생명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하는 태도 아힘사(ahimsa: 불살생, 비폭력을 뜻하는 梵語)의 실천이자 자비사상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동물까지도 한결 같이 불성생명(佛性生命)의 시각에서 동일시하고, 부처의 법음(法音)을 모든 사람들

13) 박광준(2010) pp.321~322.

에게 전하여 온갖 사람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염원했다.¹⁴⁾

흔히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 불리는 인도 마우리아왕조의 아쇼카왕(BC268~BC232)은 생명존중의 실천으로 산짐승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생명을 죽이는 제연(祭宴)을 금지시켰다. 산목숨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알고 스스로 이를 금했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람과 동물의 애호(愛護)를 장려, 선전하였다.¹⁵⁾

자비사상에는 인간평등이 전제되어 있다. 인간은 다른 어떤 중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모든 사람과 한 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자비이다. 중생을 보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중생이 된 입장을 말함이다. 인간관계의 실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원조자가 시혜자의 입장이 아닌 피원조자의 입장, 즉 수혜자의 입장과 동등한 관계라는 데에 있다. 이것은 생명존중의 사상을 기반으로 인간존중 사상으로 확대된 불교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3) 보시(布施)와 이타주의(利他主義)

보시는 대승불교의 육바라밀(六波羅蜜) 중 제1의 핵심적인 실천덕목으로 시혜(施惠)의 덕, 재시(財施), 무외시(無畏施), 법시(法施)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시는 물질로써 상대방의 어려움을 돕는 행위로 사회자원을 제공하고 환경조정과 개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재시는 재가자가 출가자에게 재물을 보시하는 것을 초기불교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삼악[탐(貪)·진(瞋)·치(癡)]의 마음으로 생기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고 하는

14) 김선근(2005) pp.163~166.

15) 서병진(2005) pp.93~94.

보살의 자비심이다.

범시는 출가자가 재가자에게 교법을 설하는 것이다. 범시는 상대방에게 올바른 정법을 설하여 바른 생활태도와 인격적으로 개성을 개선·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 출가자와 재가자는 범시와 재시로써 상호이익되게 한다. 재시가 상대방의 몸을 이롭게 한다면, 범시는 상대의 마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재시는 다함이 있으나, 범시는 다함이 없다는 것이다. 재시는 악행을 하는 이를 이끌어 선에 닿게 하고, 범시는 그 선근(善根)을 생하게 해서 해탈하게 한다.

무외시는 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좌절과 실의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것으로 생활의 불안, 정서불안, 불안정에 대해 그 불안을 해소 내지 정화하고 위기를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¹⁶⁾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결인에게 물건을 주는 것이 보시이지만 진정한 보시는 아니다. 보시 후에 후회하거나 그 대가를 바라는 것도 참된 보시가 아니며, 두려움으로 인해 명예나 이익을 위한 것은 참된 보시가 아니다. 보시한 자신과 그것을 받는 사람과, 보시한 내용,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는, 즉 삼륜청정(三輪淸淨)이 참된 보시이다.”¹⁷⁾

이 보시행은 현대 복지사회의 이타행(利他行, altruism)의 개념과 합치하며 보다 명징하게 그 윤리적인 가치를 설한다. 보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위와 생활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이며, 사회연대의식의 표현이고,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킴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

16) Ibid. pp.101~103.

17) 박광준(2010) p.330.

위이다. 이는 연기법을 통하지 않아도 보시를 행하는 자 역시 어딘가의 누군가에게서 발로한 보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진정한 사회연대와 불교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이며 현실적인 한 축임을 알 것이다.

(4) 복전사상(福田思想)

복전(福田)이란 산스크리트어 ‘punya-kṣetra’로 복의 밭, 행복을 키우는 전지(田地). 사람들이 공덕을 심는 장소 등을 나타내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복전이란 복행을 하는 대상이며 그 대상을 공양함으로써 장래에 복을 받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행이 행해지는 대상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복덕을 주는 밭이 된다는 뜻에서, 공양하는 대상을 복전이라 부르게 되었다. 복전사업은 크게 인물복전(人物福田)과 시물복전(施物福田)으로 실행되는데 인물복전은 인간에게 범보시를 하는 것이고, 시물복전은 주로 물질을 공양하는 내용을 말한다.¹⁸⁾

즉 보시행이 복을 짓는다는 것이다. 복전은 비전(悲田)과 경전(經田)으로도 나뉘는데, 비전이란 빈곤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고, 경전은 불·법·승 삼보를 말한다.

원래 복전이란 수행자의 생활을 돕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경전의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현대사회의 특히 불교사회복지의 실천과 그 외연확장을 위해서는 시물복전과 비전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복전이란 남을 도움으로 자신이 복을 얻는다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지만, 앞서 논한 참된 보시의 입장에서 복을 배품으로 복을 구한다는 어폐가 생길 수 있으며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어 간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자각하고 실천으로 이어짐이 결국 불교사회복지실천의 방편이라 할 것이다.

18) 서병진(2005) pp.110~111.

Ⅲ. 결혼이주민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1. 국제결혼 현황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추진된 조선족 동포 여성과의 결혼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결혼을 야기 시켰다. 1990년 농촌총각과 연변처녀의 첫 번째 결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를 주선한 정치인은 만주지역의 단절된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핏줄을 재결합하는 것이 가정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¹⁹⁾

이후 농촌은 영농후계자들에게 배우자를 주선하려는 여성단체나 농민단체의 중국방문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92년 중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경로로 조선족 동포와의 결혼을 주선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선 특정 종교단체가 일본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결혼 주선을 필리핀 여성으로 확대하면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한국사회의 성비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그 주요 원인은 한국사회내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의 결혼 기피 및 만혼 현상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과거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선호하게 되었고 직장 여성의 경우 결혼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여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남성의 결혼적령기를 넘기게 되거나 혹은 그 탈출구로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현상을 낳았다. 2006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39,690건으로 전

19) 조선일보, 1990.12.16. 사회면.

체 결혼 신고 건수의 11.9%가 국제결혼이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비율은 전체 결혼의 3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간단하게 농촌총각 3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것이다.²⁰⁾

하지만, 2008년 국제결혼은 36,204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42,356건)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 <표3-1>을 보면 알 수 있듯 1997년 이후 국제결혼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04년 이후에는 평균 11%대를 유지하고 있다.²¹⁾

<표3-1> 국제결혼 추이

(단위 : 명, %)

	총 혼인건수	국제결혼					
		혼인건수	구성비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1998	375,616	12,188	100.0	8,054	66.1	4,134	33.9
2000	332,090	11,605	100.0	6,945	59.8	4,660	40.2
2003	302,503	24,776	100.0	18,751	75.7	6,025	24.3
2005	314,304	42,356	100.0	30,719	72.5	11,637	27.5
2006	330,634	38,759	100.0	29,665	76.5	9,094	23.5
2007	343,559	37,560	100.0	28,580	76.1	8,980	23.9
2008	327,715	36,204	100.0	28,163	77.8	8,041	22.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 근본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빈곤의 탈출을 위한 이유이다. 이주노동자로 해외취업

20) 김오남(2008) pp.104-105.

21) <http://www.nso.go.kr>, 통계청(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의 길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결혼이기에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생활은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 같은 기본적인 곤란요소 이외에 부부관계, 자녀양육, 경제문제, 시부모와 인척들과의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정의 해체와 배우자의 재산 갈취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국제결혼의 비율은 2005년 국내 총 결혼건수 중 약 13.6%를 차지하다가 2007년에는 11.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비율은 40%에 웃도는 국제결혼의 일반화현상이 나타나는데 5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의 4분의 1 이상이 이러한 가정의 자녀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통계청은 발표하고 있다. 1997-2007년 10년간 국제결혼건수는 261,079건이며,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86,756명, 한국여성과의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74,321명으로 이주여성의 수가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2007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38,491건으로 10년 전인 1997년의 12,448건 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 이후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²⁾

또한 <표3-2>에서 볼 수 있듯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경우 중국국적의 여성들이 2007년도 전체의 49.84%를 차지함을 볼 수 있으며 그 뒤로 베트남여성들이 전체의 22.7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연변동포와의 혼인이 압도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표3-3>에서 보듯 2009년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그 수가 확연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이 더

22) <표3-1> 참조.

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과 상기하였듯 노동력의 충원이라는 농림어업종
 사자 중에서 35.9%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3-2>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적별 혼인²³⁾

(단위 : 건)

國籍 \ 年度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중 국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베트남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6
일 본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필리핀	510	850	944	964	997	1,157	1,531
몽 골	118	195	318	504	561	594	745
러시아	157	241	297	318	236	206	156
미 국	265	267	323	344	285	334	377
태 국	185	330	346	326	270	273	531
기 타	660	658	968	925	1,119	1,421	2,998
계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 통계청(2007), 2007년 인구동태(혼인)자료.

23) <http://www.kostat.go.kr>, 통계청(2007) 2007년 인구동태(혼인)자료.

<표3-3> 국적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²⁴⁾

2009. 12. 31. 현재(단위 : 명)

출 신 국	인 원 수	성 별	
전 체 체 류 자	125,087	남	15,876
		여	109,211
중 국 ²⁵⁾	33,426	남	3,311
		여	30,115
한국계 중국인	32,566	남	6,807
		여	25,759
베 트 남	30,173	남	159
		여	30,014
필 리 핀	6,321	남	164
		여	6,157
일 본	5,074	남	517
		여	4,557
캄 보 디 아	3,230	남	9
		여	3,221
몽 골	2,292	남	43
		여	2,249
태 국	2,029	남	41
		여	1,988
미 국	1,638	남	1,139
		여	499
기 타	8,338	남	3,686
		여	4,652

24) <http://www.immigration.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25) 한국계 중국인 미포함.

2) 배우자 선택과정 및 결혼과정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외국인여성이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방법은 크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지인의 소개와(49.3%) 직접만남(16.1%), 종교단체(15.6%), 결혼중개업체(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만남을 제외하고는 누군가의 중개를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지인의 소개나 종교단체 등을 통해 만난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상업적 결혼중개업체가 어느 정도로 개입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2000년 95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6,616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한다.

맞선을 신청한 한국남성들은 5박 6일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가게 된다. 도착 2일째 4시간의 만남 후 여성을 결혼상대자로 결정하게 되면 그 베트남여성은 3일째 에이즈 검사 등의 건강진단을 하고 남성은 신부 측 부모를 만나고 4일째는 결혼을 하게 된다. 5일째는 신혼여행을 하고 6일째 귀국한다. 이 과정의 수속비는 남성이 800만~1000만원을 감당하고 그 중 30~40만원 정도의 돈이 신부측에 전달된다.²⁶⁾ 하노이의 경우 비행기 도착과 출발시간을 맞추면 총 3박 4일 만에 맞선부터 결혼까지의 모든 일정이 가능한 것이다. 맞선은 보통 3차까지 진행되는데 한국남성은 적게는 20~30명 많게는 200~300명의 베트남 여성을 본다. 차례로 5~10명의 여성들이 들어오면 남성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1차로 선택하고, 1차로 선택된 여성들 중 또 다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는 2차 맞선으로, 또 3차 맞선으로 이어진다. 맞선 시 여성들은 남성의 신상에 대해 질문할 수 없고, 남성은 통역자를 통해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한다.²⁷⁾

26) <http://www.migrant.or.kr>, 안산이주민센터 홈페이지.

결혼 중개업체는 결혼자체가 우선인 남성들과 가난 때문에 사랑 후 결혼이 아닌 결혼 후 사랑을 택한 여성을 상대로 상업적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또한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결혼은 이후의 가정생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발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남정보다는 여성이주민들의 피해와 상처가 더욱 크고 깊을 수 밖에 없다.

3) 결혼이주민 가족의 문제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남편과 2인 가족을 이루고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남편과 자신의 사이에 낳은 자녀와 함께 살거나, 남편과 남편의 전 배우자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사는 경우, 남편과 이주여성자신의 전배우자와의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사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핵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러한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에서 이들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움은 ‘한국어 의사소통’이다. 은행업무보기, 세금내기, 집안일 하기 등은 평균이하의 어려움을 나타내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재는 심각한 가정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언어소통 이외에 생활습관, 생활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 문화적인 차이가 가정생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이주민가족의 문제는 결혼이주여정보다는 한국남성이 더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뿌리 깊은 가부장적 체제, 두 국가 간 근원적인 문화 차이 등이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언급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가족 갈등의 양상을 가족관계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갈등과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자녀양육의

27) 고희웅 외(2005); 김오남(2008) p.109. 재인용.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갈등해결의 최악의 선택인 가정해체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하며 주로 김오남(2006)을 참조하였다.

(1) 부부관계 문제

의사소통 장애가 가장 크다. 외국인과 결혼했으므로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부부간의 갈등과 좌절은 더해 간다. 기존의 연구들은 의사소통 장애는 부부갈등의 원인이자 양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언어장애로 인한 부부간의 상호이해와 친밀감의 교류는 어려움을 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부부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반인권적인 부부폭력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하나이다. 이들 가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남편의 성격장애나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젊은 아내에 대한 위기감, 가출에의 의혹 등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2006)의 이민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신국가별로 보면 남편폭력은 베트남 부인에게 낮게, 태국부인이나 필리핀 부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욕적인 말은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대부분 30% 이상의 부인들이 경험하고 있었으나 베트남 부인은 그 비율이 21.1%로 낮게 나타났다. 폭력의 형태로는 물건던짐이나 세계 밀기, 실제 손발로 구타하기,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등이 있으며 이는 부부갈등의 가장 극단적인 표출방법인 폭력이 매우 보편화된 갈등양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폭력의 실태는 다음의 신문기사 전문이 대변해 준다.

결혼 이민자 ‘남편이 무서워’..때리고 욕하고...2명중 1명꼴 ‘폭력에 시달려’» 결혼이민자 폭력 발생 현황

외국에서 온 여성 결혼이민자 두 명 중 한 명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월간 정책연구지 <보건복지포럼>에 실은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 방안’ 보고서를 보면, 결혼이민자가 겪은 폭력 발생률은 47.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18일~9월6일 중국·베트남·필리핀·태국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 1196명과 한국인 배우자 103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폭력 유형별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신체적 폭력이 30.6%로 가장 많았고, 모욕적인 말을 해 괴롭히는 정서적 폭력(28.9%), 가족을 돌보지 않는 등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방임(19.6%), 경제적 착취(12.6%), 성 학대(6.6%)가 뒤를 이었다. 이런 폭력은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2년이 안됐을 때는 폭력 발생률이 36.6%였다가 2~4년은 50.8%, 4~6년은 50.4%, 6년 이상인 때는 58.9%까지 치솟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16.7%가 “그냥 참고 산다”고 응답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어려운데다 이혼하면 무국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유경 부연구위원은 “남편 등의 폭력 때문에 무국적 상태가 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정부가 체류와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또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상담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

2006년 11월 여성부에 의해 설치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에서 지난 3년(2006.11.10-2009. 10.31)간 70,305건의 전화와 면접, 방문상담을 진행 한 결과를 분석한 상담자료집에 의하면 이주여성부부갈등의 경우 3년간의 상담 통계 비율은 13.29%로 나타났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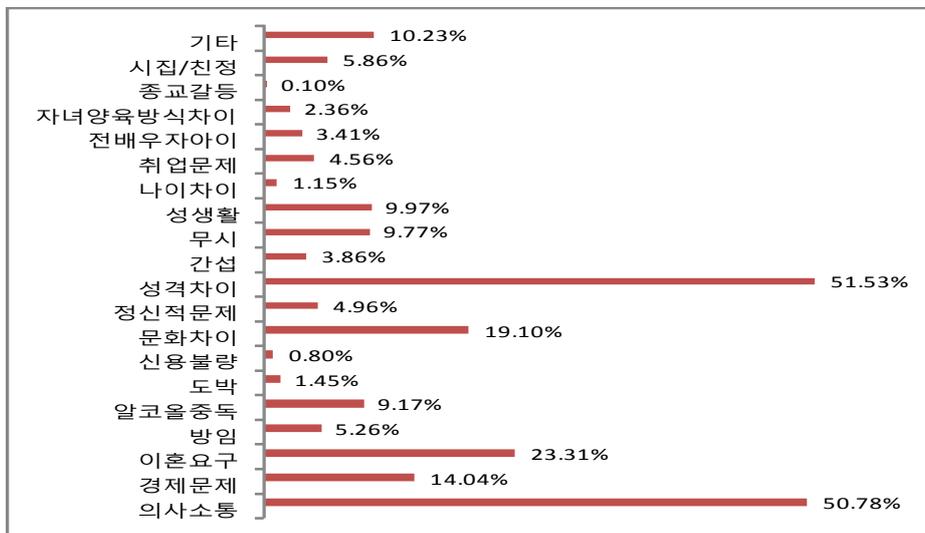
2008년에는 2,337건으로 11.73%였으나 2009년에는 1,008건으로 19.28%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부부갈등의 범주가 가족갈등에서 따로 처리한 시점이 2008년 7월 이후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9년의 19.28%라는 비율이 부부갈등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나타내는 수치라 볼 수 있겠다.

28) 김소연, 한겨레신문, 2009. 6. 8. 사회면.

29) 여성부(2010) pp.45~46.

부부갈등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9년 4~6월 상담일지 중 부부 관련 상담일지 1,995건을 분석하여 부부갈등요인을 확인해 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표 3-1> 부부갈등요인 (*총 1,995건 대비 중복체크)



부부갈등의 경우 성격차이(1028건, 51.53%), 의사소통문제(1013건, 50.78%), 이혼요구(465건, 23.31%), 문화차이(381건, 19.10%), 경제문제(280건, 14.04%) 등이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다. 성격차이는 모든 부부들에게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의사소통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성격 차이를 좁히기 힘들게 만들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문제도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생활(199건, 9.97%), 무시(195건, 9.77%), 알콜중독(183건, 9.17%), 시집/친정(117건, 5.86%), 방임(105건, 5.26%), 정신적 문제(99건, 4.96%), 취업문제(91건, 4.56%), 간섭(77건, 3.86%), 전배우

자아이(68건, 3.41%), 자녀양육방식(47건, 2.36%) 등도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문제는 부부갈등 요인에서 14.04%를 차지하였는데, 이 내용을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총 280건 중 시집과 친정의 경제적 지원이 각각 119건, 42.5%로 같은 비율로 나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주여성들의 친정 부양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 실상은 시집과 친정의 경제적 지원이 다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의 친정 부양은 내국인의 결혼생활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있더라도 여성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사항들인데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날 뿐인 현상임이 밝혀졌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경제문제 내에서도 42건, 15%를 차지하였으며, 전체부부갈등(1,995건)에 비추어보면 2.01%정도를 차지한다.

부부갈등 중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비중은 465건, 23.31%를 차지하였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아내의 이혼요구비율은 267건, 57.42%이며, 남편의 이혼요구비율은 185건, 39.78%를 차지하였다. 여성들의 이혼요구가 남편보다 17.64% 높았다. 이에 비추어 여성들에게 국제결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부부갈등 중에서 이주여성들이 호소하는 배우자의 정신적 문제는 총 99건, 4.96%였으며 이를 상세분석을 해 본 결과, 남편의 정신적 문제는 77건, 77.78%이었으며, 아내의 정신적 문제도 22건, 22.22%를 차지하였다. 상담에서 나타난 정신적 문제는 한국인 배우자의 문제로 이주여성들이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주여성들이 배우자의 정신적인 문제를 알기는 해도 이를 대처하기는 어려운데 우선 배우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렵고, 병원비 등 당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도 참으로 어려워지는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부갈등 중 성생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199건, 9.97%이었다. 이중 남편들이 하는 하소연은 아내가 거부하는 경우(81건, 40.70%)가 많고, 이주여성들이 하소연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일방적 강요(58건,

29.15%), 성기능장애(47건, 23.62%), 남편의 거부(13건, 6.23%) 등으로 문제가 드러난다.

기타 10.23%에 해당하는 내용은 친구와의 문제, 아내의 컴퓨터 중독, 의심 혹은 불신, 마약, 외국인등록과 체류연장문제, 국적 취득문제, 아이 아빠 의심, 월급에 대한 간섭, 임신강요, 아내 음주문제, 아이들 만나는 문제, 중개업자의 거짓정보에 의한 갈등 등이었다.

(2) 자녀양육 문제

보건복지부(2005)의 보고에 따르면 이주여성과 자녀의 관계를 보면 전체의 64.3%가 자녀와 집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의 매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본과 필리핀 어머니들이 다른 나라 어머니들보다 자녀와 더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한 경우 전처의 자녀와는 거의 대화가 없다는 비율이 39%나 되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견해가 60-70%정도 되며 자녀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만족도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들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적절한 언어 습득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열악한 가정환경과 이질적 문화에 대한 부적응은 스스로를 상대적 박탈 등을 느끼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아동들에 전해져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갖는 데에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 대다수는 학습 및 생활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 원인이 가족 내 언어소통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적 문제

2005년도 가구당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절반이 넘는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정의 절대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50%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전남과 광주인근 지역의 국제결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 김오남(2006)³⁰⁾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48.9%, 150만원 이하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 가정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정해체의 문제

통계청의 이혼조사 통계(2007)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이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별거나 이혼을 하였다면 더욱 구별이 어렵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사(2005)에서도 전수조사는 아니나 국제결혼 이민여성 대상자 가운데 별거나 이혼인 경우가 12%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특히 중국 한족의 28%가 가정해체를 경험하였다. 중국동포인 경우에도 14%가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3-4>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4010건으로 중국 2,551건(63.6%), 베트남 610건(15.2%), 일본 202건(5.0%), 필리핀 171건(4.3%)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처는 타국에 비해 혼인 누적건수가 많아 이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인 처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111.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30) 김오남(2008) p.137. 재인용.

<표3-4>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 건수 및 구성비

	2002	구성비	2003	구성비	2004	구성비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계	401	100.0	583	100.0	1,611	100.0	2,444	100.0	4,010	100.0
중국	181	45.1	275	47.2	841	52.2	1,431	58.6	2,551	63.6
베트남	7	1.7	28	4.8	147	9.1	289	11.8	610	15.2
일본	97	24.2	121	20.8	145	9.0	168	6.9	202	5.0
필리핀	29	7.2	44	7.5	112	7.0	142	5.8	171	4.3
몽골	10	2.5	6	1.0	83	5.2	116	4.7	132	3.3
원주민	3	0.7	16	2.7	67	4.2	75	3.1	105	2.6
미국	21	5.2	27	4.6	74	4.6	62	2.5	73	1.8
기타	53	13.2	66	11.3	142	8.8	161	6.6	166	4.1

-통계청 (2007) 2006 이혼통계.

2009년의 자료를 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남, 녀를 합한)의 이혼은 11,692건으로 전년의 11,255건보다 437건(3.9%)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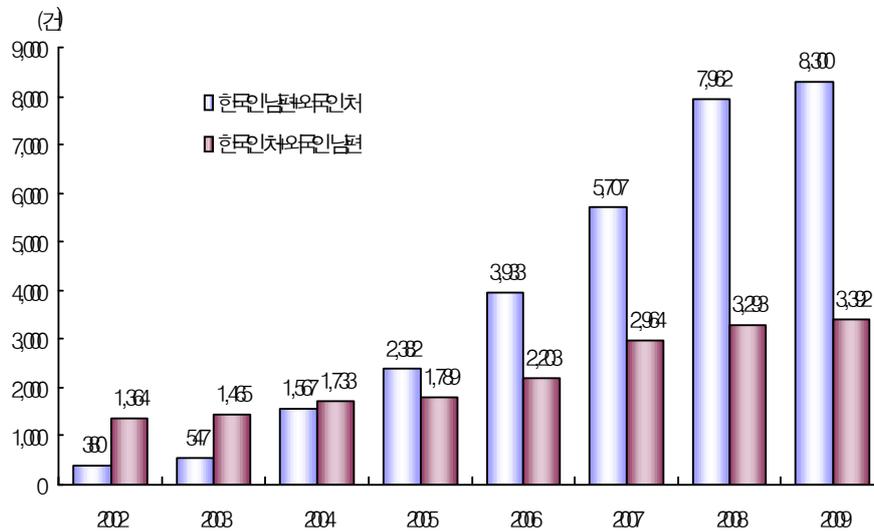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8,300건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하였으며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은 3,392건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외국인과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총 이혼의 9.4%를 차지하였다. 2010년 4월 배포한 통계청의 보도자료 ‘2009년 이혼통계 결과’의 외국인부부에 대한 이혼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3-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³¹⁾

(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이혼 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9.4
증 감	50	268	1,288	871	1,965	2,535	2,584	437
증 감 률	3.0	15.4	64.0	26.4	47.1	41.3	29.8	3.9
- 한국인남편과 외국인처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증 감 률	-1.8	43.9	186.5	52.0	65.1	45.1	39.5	4.2
- 한국인처와 외국인남편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증 감 률	4.4	7.4	18.3	3.2	23.1	34.5	11.1	3.0

<도표 3-2>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추이³²⁾



31) 통계청(2010) p.15.

32) 통계청(2010) p.15.

2009년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외국인 처의 국적을 보면, 중국 5,562건 (67.0%), 베트남 1,292건(15.6%), 필리핀 285건, 일본 2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여성과의 이혼비중이 높은 것은 혼인누적건수가 많기 때문이며 국적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나라는 베트남으로 전년보다 19.9% 증가하였다.

초기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중국이나 연변의 조선족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등으로 근래에는 베트남 여성들과 많은 국제결혼을 하며 그에 따른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표3-6>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및 구성비³³⁾

(단위: 건, %)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성비	증감률
계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100.0	4.2
중 국	180	274	835	1,425	2,538	3,654	5,398	5,562	67.0	3.0
베트남	7	28	147	289	610	895	1,078	1,292	15.6	19.9
필리핀	28	43	108	140	165	213	268	285	3.4	6.3
일 본	78	89	114	116	147	157	205	227	2.7	10.7
몽 골	10	6	83	116	132	173	213	176	2.1	-17.4
우즈베 키스탄	3	16	67	75	105	112	160	174	2.1	8.8
감 보 디 아	0	0	4	6	19	99	178	109	1.3	-38.8
기 타	74	91	209	215	217	404	462	475	5.7	2.8

33) 통계청(2010) p.15.

또한 2009년에 이혼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동거기간은 다음의 <표3-6>에서 보듯 평균 3.1년으로 2005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전체 2009년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혼 11,692건 중 동거기간이 0~4년인 경우는 79.0%로 2008년에 비해 3.7%p 감소하였다.

이는 <표3-7>에서 보듯 외국인 처의 동거기간 (0~4년) 이혼 비중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원인으로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결혼이주민여성을 위한 지원활동과 무분별한 국제결혼에 대한 정부의 제재방침 등이 일정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통계치라 할 것이다.

<표3-7>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단위: 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2.2	2.3	2.1	2.1	2.2	2.5	2.7	3.1
외국인 남편+한국인 처	5.3	5.3	6.0	5.7	5.3	5.9	5.6	5.7
전 년 대 비 증 감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0.6	0.2	-0.3	0.0	0.1	0.3	0.2	0.4
외국인 남편+한국인 처	0.0	0.0	0.7	-0.3	-0.4	0.6	-0.3	0.1

<표3-8> 동거기간이 0~4년인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구성비³⁴⁾

(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이혼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 외국인과의 총 이혼(A)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동거기간 0-4년(B)	1,166	1,385	2,406	3,217	4,952	6,987	9,308	9,232
구성비(B/A)	66.9	68.8	72.9	77.1	80.7	80.6	82.7	79.0
• 한국인남편+ 외국인 처(C)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동거기간0-4년(D)	339	493	1,421	2,157	3,594	5,185	7,183	7,087
구성비(D/C)	89.2	90.1	90.7	90.6	91.4	90.9	90.2	85.4
• 한국인 처+ 외국인 남편(E)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동거기간 0-4년(F)	827	892	985	1,060	1,358	1,802	2,125	2,145
구성비(F/E)	60.6	60.9	56.8	59.3	61.6	60.8	64.5	63.2

이혼현황을 통계청에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15-19세의 여성이 5.4%, 20~24세의 여성이 19.7%로 약 25%가 24세 미만의 여성들이다. 이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많은 나이 차이가 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가부장적인 보수주의자들은 국제결혼의 이혼이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보다 엄격한 체류자격 부여 및 국적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실업, 알코올 등 주변화 된 남성과의 결혼이 위기를 맞는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표3-9>에서 볼 수 있듯 외국인여성과 한국인남성 사이의 이혼 사유로는 도시와 농촌을 떠나서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비중(22%)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배우자의 부정(9%)과 가족 간 불화(7%)의 순으로 이혼사유 순을 볼 수 있다.

34) 통계청(2010) p.17.

<표3-9>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시·도, 2008³⁵⁾

Table 24. Divorces with Foreigners for Provinces by Reasons for Divorce

단위: 건 Unit:case

남편 주소	외국인처와한국인남편의이혼사유ReasonsforDivorcebetweenForeignWifeandKoreanHusband								
	계	배우 자부 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 제	성격차이	건강 문제	기 타	미 상
전 국	7,962	721	545	566	473	2,247	75	3,029	306
서울특별시	1,941	200	161	148	130	554	9	666	73
부산광역시	384	33	23	29	17	106	9	155	12
대구광역시	265	26	7	14	14	73	4	120	7
인천광역시	488	40	39	25	39	124	2	182	37
광주광역시	142	10	11	13	11	47	-	47	3
대전광역시	189	20	11	13	13	46	4	76	6
울산광역시	145	15	9	9	6	43	1	54	8
경 기 도	1,877	179	151	117	131	515	21	653	110
강 원 도	194	16	8	21	9	66	-	70	4
충청 북도	232	22	8	13	9	68	3	106	3
충청 남도	361	24	22	28	22	97	3	160	5
전라 북도	358	30	22	32	17	96	4	151	6
전라 남도	357	26	21	24	18	109	7	143	9
경상 북도	402	36	20	25	13	92	1	209	6
경상 남도	460	39	20	46	15	131	6	194	9
제주도	73	3	9	3	2	22	-	32	2
국 외	94	2	3	6	7	58	1	11	6
처 주소	외국인남편과한국인처의이혼사유 ReasonsforDivorcebetweenForeignHusbandandKoreanWife								
	계	배우 자부 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 제	성격차이	건강 문제	기 타	미 상
전 국	3,293	227	115	158	242	1,232	31	1,056	232
서울특별시	1,000	87	27	46	55	416	8	314	47
부산광역시	160	7	7	10	7	73	-	51	5

35) <http://www.kostat.go.kr>, 통계청 온라인 간행물(2008),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시도.

대구광역시	59	7	2	3	4	21	-	21	1
인천광역시	193	13	13	12	17	50	2	67	19
광주광역시	45	3	2	-	6	10	1	22	1
대전광역시	52	3	1	3	4	14	1	24	2
울산광역시	24	2	1	2	-	10	-	9	-
경 기 도	714	60	38	31	53	214	9	264	45
강 원 도	48	-	-	5	3	18	-	21	1
충청 북도	58	2	1	3	4	17	-	28	3
충청 남도	54	8	1	4	3	15	1	20	2
전라 북도	55	4	2	1	6	17	-	24	1
전라 남도	56	3	1	1	4	15	-	25	7
경상 북도	54	3	1	2	3	21	1	22	1
경상 남도	61	6	1	2	1	22	1	27	1
제주도	35	-	1	2	2	8	-	19	3
국 외	625	19	16	31	70	291	7	98	93

- 통계청(2008)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시도, 2008.

2. 결혼이주민여성의 위기

1)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결혼이주여성들이 당면하게 되는 부부 및 가족갈등은 결혼당사자인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들의 개인적인 특질에서부터 이들이 처한 사회 환경적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차원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국제 결혼한 이들 또한 한국의 여느 부부들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한 갈등상황에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갈등요인에 의해 결혼의 위기와 파국을 경험하는가 하면, 갈등극복을 통해 더욱 응집된 부부 및 가족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남편가족의 갈등요인이 반드시 부부 및 가족관계의 파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내국인끼리의 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호 소통과 이해의 자원이 부족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족내·외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위기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자신들의 결혼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요인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만의 고유한 갈등유발요인과 그 문제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의 문제는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결혼이라는 것이다. 여성결혼이주자들의 결혼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결혼이라기보다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농촌총각과 못사는 나라의 여성의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생겨난 것이 대부분인 만큼 결합의 순간부터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내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남성에 비해 결혼관계에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의존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구속, 정서적·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결혼생활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나 대우를 받아도 보호받기 힘든 위치에 있게 된다.

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적응은 당연히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들은 외국의 아내와 며느리를 맞는다는 것에 대해 상대방과의 적절한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함은 물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특질과 배경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갈등의 시발이 된다. 특히 이들 부부들은 대화 시 주로 한국어를 사용(92.8%)하고, 영어(7.5%)와 본국어(6.9%)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부도 2.7%로 나타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5), 이는 곧 이들 가족이 한국남성 일방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한국어가 미숙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언어장벽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속마음을 쉽게 표출하기 어려움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 역시 아내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내국인 부부에 비해 대화의 부족은 물론 상호 소통과 이해의 충분한 자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쉽게 갈등의 누적이나 잦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주여성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늘 어린 아이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이 잘사는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열등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모든 기준이 ‘한국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을 뿐 다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 결혼관계의 불평등성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인경, 2007)³⁶⁾.

둘째로 언어 및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적응이 어렵다. 같은 아시아권의 여성이라 해도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이나 노력 없이 사고방식이나 언어, 생활방식을 한국문화에 단시일에 맞추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때 가족간의 의사불통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소외감이 커진다. 결혼 초기 한국남성이나 가족들은 외국인과의 결혼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억울함이나 의사소통의 불량에 대해서, 한국문화에 서툰 행위를 수용하는 듯하나,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말이 통하지 않거나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남편들은 쉽게 아내에게 좌절을 느끼면서 아내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과묵함이 남성의 미덕이라는 잘못된 관념에 익숙한 한국남성들은 말을 안 해도 결혼이민자인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지만 정작 언어적 표현조차 원활하지 않은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36) 이인경(2007) pp.5~22.

는 어렵다. 소위 ‘고맥락문화’에 익숙한 한국남편들은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할 능력이나 태도를 함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설명할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한국남성문화에 의해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조차 남성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행위수정이 쉽사리 촉발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의 농촌 경우 가부장적 가족 관행이 많이 남아 있어 타문화권의 여성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 및 지지자원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고립이다. 고국과 가족을 떠나 혼자라는 것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농촌의 경우 젊은 여성이 없기 때문에 또래집단의 지지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으면 사회적인 관계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사 교류의 기회가 있더라도 남편과 시부모의 간섭과 통제로 이런 기회마저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중국교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가출의 우려 때문에 경계하며 심지어 말까지 잘하면 가출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한국어 교육조차 꺼리는 경우도 있다.

2) 사회제도권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안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결혼이민여성 가정 중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15.5%나 된다는 사실을 통해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사회복지적 지원의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최후의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국제결혼이주여성가구 배제로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동시에 외국인이란 이유 때문에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국제결혼 가정의 3/1이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며 자신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도 모른다. 외국인은 원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모성보호의 문제도 시급하다. 특히 이들의 20% 정도가 낙태를 경험하였으며 낙태를 하게 된 이유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동포가 아닌 다른 국적의 경우에는 12%가 ‘남편 또는 가족의 반대’로, 18.6%가 ‘혼혈아 걱정 때문에’ 낙태를 했다고 하였다. 질병 특성에서도 우리나라 일반인에 비해 알레르기 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낭종, 심장병, 중풍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³⁷⁾

3.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사업 현황

1) 정부시책 및 관련법제 현황

정부는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8월 16일 사회문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6개 영역 29과제로 구성된 추진안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책”³⁸⁾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관계법률을 보면 현행법 체계상 외국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

37) 보건복지부(2005) pp.229~231.

38)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2006) pp.10-11.

는 법률로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리고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다문화가정 지원법』이 있다.

간략하게나마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법과 제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적법**: 국적법은 한 국가 국민의 국적 취득과 상실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써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정되었다. 한국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인해 법무부는 국적법을 개정하게에 이르렀고, 1997년 11월 18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국적법의 내용 가운데 국제결혼과 관계가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국적이 부계혈통주의로부터 부모양계주의로 바뀐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의 내용에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폐지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한국인과 결혼한 뒤 2년이 지난 후에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중국동포를 위시한 외국인 여성의 위장결혼을 막는다는 의도가 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 결혼 2년 안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한국국적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자 법무부는 2003년 12월 국적법 상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편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을 신청하는 여성이 남편의 귀책사유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후 국적법의 부분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결혼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1세기의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참여정부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 5월 26일 제 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은 2007년 5월 17일 공포되어 동년 7월 18일 시행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단편적으로 시행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종합적·거시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재한 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재한 외국인 등의 처우,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이 법령의 제정으로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정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사회’로 만든다는 취지와 외국인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적과 인종을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무부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둘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 한다는 것이며, 셋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정부가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한다.

- **산업연수생제도**: 1992년부터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의 단

순기능인력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 도모 등을 위하여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현지에서 선발하여 국내기업에 투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이 해당직종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특정직종의 전문기술인력에 한하여 허용되었었다. 따라서 이 현지 선발 노동자들은 정규 노동자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연수생’의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이 제도는 연수생이 한 사업장에 고정 근무해야 하는 점, 선발과정 및 본국에 임금 송금 문제의 불투명성 그리고 기술 전수 등의 지정된 연수시간 없이 이들을 실질적으로는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편법적 행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유네스코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체불·노동사고·부당해고·작업장에서의 성적학대 등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자행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공식적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기도 했다.

- **고용허가제도:** ‘산업연수생제도’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고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국내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국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사증(또는 취업허가)을 발급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발급하여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으로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의무화하고,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 인력의 선정 및 도입 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송출국과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담당하며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즉, 근로자의 기능 수준이나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노동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일의 경우처럼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활용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의견을 국가가 수용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가 사회문제로 될 것을 우려하여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다.

- **통합고용허가제:**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병행해 오던 ‘산업연수생제도’를 2007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여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고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넓히게 되었다.

- **외국적동포 방문 취업제:** 출입국 및 취업 등의 혜택에서 그간 소외받아 온 외국적동포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한 ‘방문 취업제’가 2007년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방문 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최대 3년간 계속 체류·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 다문화가정지원법제 및 지원기관

우리사회는 다출산국·다인종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에도 ‘단일민족’의 자긍심에 기반한 뿌리 깊은 ‘순혈주의’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이주자들의 차별을 대물림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무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정부는 2006년 4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06)³⁹⁾.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자 정책이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 신장과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인력 양성의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 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둔다. 또한 이를 위한 3대 주요 추진과제로 ① 법·제도적 기반 구축, ② 사회적 인식 개선, ③ ‘맞춤형 지원대책’마련을 설정하였다.

우선,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모성보호법과 병역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며, 둘째로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정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주 노동자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직장직무 교육 시 다문화 인권 교육을 교과목에 편성하고, 이주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외국인의 날’ 지정과 ‘다문화 홍보대사’ 위촉 등으 다양한 홍보 실시가 포함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자들의 유형별로 가장 시급한 욕구를

39) 74회 국정과제회의 보도자료(2006) p.1.

찾아주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위해 국적취득 가능여부와 거주지를 기준으로 ① 국내혼혈인, ② 국외혼혈인, ③ 국내외국인으로 유형화하고 차별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제정
- ②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혼인파탄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외국인 전용쉼터를 확대
- ③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용 및 정착 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④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및 아동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 반영 및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 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 및 보건 서비스 시스템 구축
- ⑥ 정책에 다문화 관점 확산 및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 ⑦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가 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주관 아래 새로 만들어졌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임신·출산 지원과 육아 교육을 통해 그들의 모성보호와 그 자녀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였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등 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 외국현지법령 준수 등의 의무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을 2007년 12월 14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여성가족부, 2007)40).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센터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과거 여성가족부 소속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여성가족부가 여성부가 되면서 가족을 담당하게 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이 센터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내 다문화가족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명칭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뀌어 2010년 현재 159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 가족생활을 지원한다.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취·창업 지원사업 등이 있고, 기타사업으로는 통·번역 서비스, 자원봉사단(멘토링 등) 운영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실시하거나, 센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도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⁴¹⁾.

3) 다문화가정의 사회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가족

40) 여성가족부(2007) pp.53-54.

41) 보건복지부(2008) pp.12-13.

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말한다.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매년 발표한다.

<표4-1> 2009년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2,062,877원)

(2)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급여의 내용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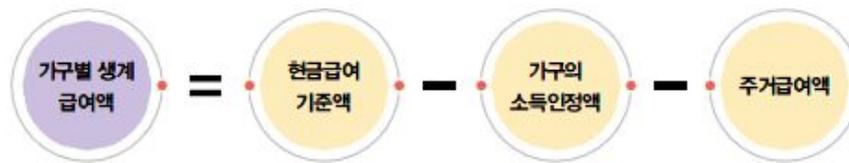
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제한 금액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표4-2>2009년 주거급여 한도액 및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그림4-1> 가구별 생계 급여액 계산

(2) 주거급여

급여의 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제공

(3) 교육급여

급여의 내용: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9,000원/1인), 학용품비(45,000원/1인)
 중학생 : 부교재비(33,000원/1인), 학용품비(45,000원/1인)

(4) 해산급여

출산(출산예정 포함) 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5)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1인당 40~50만 원 지급

(6) 기타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급여, 의료급여

(3) 신청방법



<그림4-2>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은 읍·면·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늦어도 30일 이내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준다.

-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보험료 납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20개국)

-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공,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송출 근로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법령 적용

(2) 보험료부담

-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소득월액의 4.5%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 지역가입자(자영자 등)는 본인의 신고(실제)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3) 급여혜택

- 외국인가입자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급여이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다.

-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유족연금 가입 중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사망한 때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반환일시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 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③ 우리나라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휴·폐업 등의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 부모, 자녀)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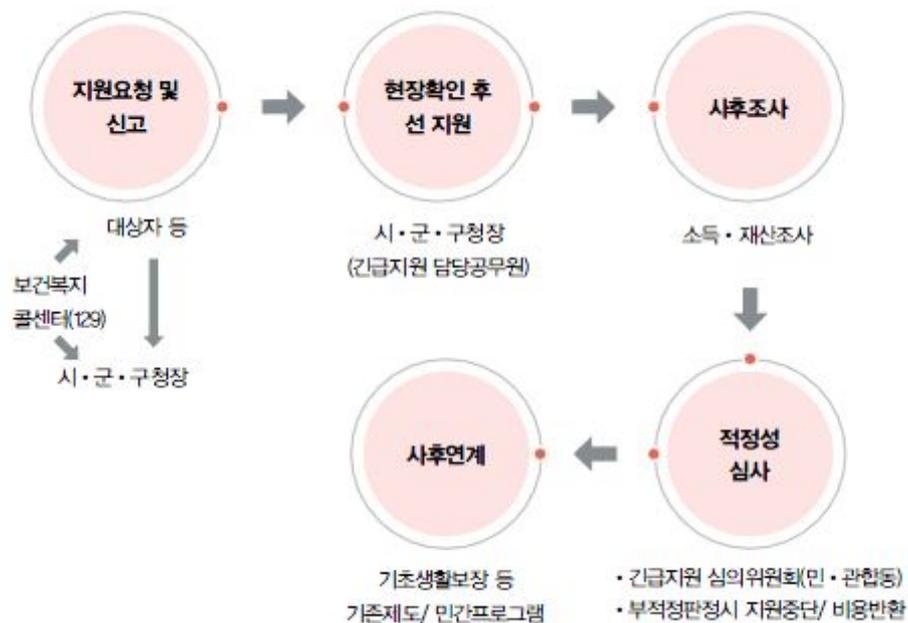
(1) 적용대상

(1)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포함)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2)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그림4-3>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한다.

-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 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3) 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기준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199만원) 다만,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4인가구 기준 : 132만원)

- 재산기준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09.2.6 시행)

(4)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그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 자활근로사업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기술, 자금 등의 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1) 적용대상

- 소득인정액(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정부가 산정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층 이하인 경우

-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근로조건

• 1주 근무일 및 1일 근무시간은 대상자의 근로능력 및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일 5~8시간, 1주 4~5일 근무에 1일 임금이 21,000~31,000원이다.

-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가까운 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한다.
-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02-324-1841

(3) 신청방법



<그림4-4>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

- 읍·면·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뒤 신청한다.
-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다음, 대상자여부를 판단한다.
- 담당 기관이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한다.
- 가까운 읍·면·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상담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02-324-1841, www.jahwal.or.kr)

- **한부모가족 지원**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1) 서비스종류

-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표4-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 (취학시 만 22세미 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활동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 고교생학비 :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사람(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 원 이내
- 대여이율 : 연이율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단, 국

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표4-4>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가구
2009(원/월)	1,086,490	1,405,540	1,724,590	2,043,640	2,362,690	1,817,454

※ 7인 이상 가구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19,050원씩 증가(7인 가구 2,681,740원)

(2)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다.
-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뒤, 대상자인지를 판단하여 알려준다.

-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방법

(1)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된다.

- 필요한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 본인이 돈을 벌지 않고, 남편(부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된다.

-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외국인등록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이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여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지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 가입방법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이 혼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3) 가입자 혜택

- 병·의원, 한의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단 진찰, 치료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한다.

-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는다. 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4) 보험료 납부

(1) 직장가입자

- 보험료 납부 : 매월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한다.

(2) 지역가입자

• 보험료 납부

- 보험료는 매달 부과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월 25일까지 납부한다.

(단, 자격이 소급취득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보험료에 합산부과)

- F-1~2와 F-5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매월 납부한다.

유의사항 : 단,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배우자임이 확인될 때는 내국인 세대에 합가 신청하여 내국인 부과기준으로 매월 납부할 수 있음

(6) 상담기관 또는 문의처

건강보험 보험료, 자격요건,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표전화(☎1577-1000) 또는 영어상담전화(☎02-390-2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⁴²⁾

42) 여성가족부 다누리. DANURI, <http://liveinkorea.mogef.go.kr>.

IV.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실천방안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단의 이해와 지원

지난 2007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1,066,273명으로 외국인 백만명시대를 열었으며 결혼이민자가 11만 명이었다. 또한 2006년 3만5천 명이었던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2029년에는 3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될 것 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1990년대에 들어서 현행의 법 테두리에서 과학적인 복지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불교사회복지계는 짧은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의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복지사업을 해왔고 그 전문성도 점차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상기하였듯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몇몇의 뜻 있는 승려들과 기관을 제외하고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과 이해가 타 종교 사회복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의 구석진 곳곳에서 고통 받고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불교사회복지계도 불철주야 이타행(利他行)을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이미 오류년 전에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한국체류 외국인과, 과거 혼혈인이란 명예스럽지 못한 명칭으로 지칭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특정지역뿐만이 아닌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수월히 만날 수 있는 현실에 이들을 위한 종단차원의 전문복지센터가 수 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불교사회복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계 내의 관심과 이해가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 할 뿐이다.

불교의 연기관과 자비행은 상의(相依)의 원칙아래 있는 이타행임을 자각해야한다. 연기법에 의거 우주 내의 모든 존재, 즉 개인,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하위의 법과 제도, 사회문화적 현상들로부터 상위의 그것들에 이르기까지 낱낱의 자체가 동시에 상의상관적(相依相關的)

관계에서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를 구성한다고 본다.⁴³⁾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불교사회복지의 이념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바라문의 사성계급을 부정하며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 부처의 의지와 부합한다. 조계종을 위시한 불교 제 종단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넓고 깊어져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정에 대한 불교단체의 교육·홍보강화

불교 단체라 함은 사찰뿐만이 아닌 대학생동아리, 사찰의 봉사회, 거사협회, 청년회, 불교사회복지단체 등 불교 신앙을 가지고 종교 활동 및 학술 활동, 취미, 봉사 활동을 하는 모든 제단체를 말한다.

이들 단체에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불교사회복지계의 주도적인 교육과 세미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미 형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분야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세미나,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담론의 재생산과 새로운 사업 모색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그 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내 유일의 불교종립종합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국대학교에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사회복지학과의 본교 설립이 시급하며 이에 따르는 박사과정 등의 학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 제종단의 이해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해도 전문적인 서비스실천방안의 작성과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불교사회복지학과의 설립이 시급하며, 이 과정 안에서 숙련된 다문화가정 전문 사회복지실천가가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43) 서병진(2005) pp.103~104.

다문화가정의 위기개입에는 일상적인 사회복지의 위기개입방법으로는 적절한 지지를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위기개입의 대상자는 같은 언어를 쓰고 외양으로도 차이가 없는 동일문화권이었으나, 다문화가정의 클라이언트, 결혼이주여성은 동일 문화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이 일반사회복지대상자에 위기개입과의 큰 차이이며, 문화상대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문화상대주의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다문화가족 위기개입의 기본은 상대방의 문화 즉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대상자와 라포형성이 가능하며, 또한 한국의 배우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는 불교계의 선근들뿐만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 사업의 홍보, 인식공유 뿐만이 아닌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마저 교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시행함은 상술한 바와 같이 불교 종단의 복지마인드와 전문적인 학제의 설립, 그리고, 사원을 책임지는 스님들을 필두로 하여 불자 모두의 자비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불교관련 복지시설 및 사업체의 캠페인 공조

상기한 교육 및 홍보와 상통하는 내용이라 볼 수도 있지만 불교관련 복지시설 및 사업체의 캠페인 공조는 그 목적이 다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불교계의 복지시설과 민간 사업체가 함께 하는 대국민 교육과 사업관련 기금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예를 들면 가정이 해체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협찬 사업체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시 일정 부분의 기금을 조성하는 공익캠페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복권이나 경마, 경륜 등의 사행성 공공사업과의 캠페인 공조도 시도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서비스 제공의 성과와 수치로 사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바, 대상에 질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계량화된 성과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리단체, 공익단체의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과 사업을 시행함에 국가보조금 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해체예방,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 대한 안정적인 동화를 위한 기금모금(fundraising)형 캠페인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와 교육, 더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결혼다문화가정과 이혼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지원정책들을 수행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기관들과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연계를 통해 불교사회복지계 내의 관련 전문능력을 강화하며 불교계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현실과 위기상황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제고를 도모 한다.

4. 사찰복지자원의 적극적 개발 및 활용

현대의 지역생활에는 가정기능의 약화나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으로 인해 복지욕구가 이전보다 증가되고 현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복지활동이 여러 민간, 봉사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민간, 봉사단체라 함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있어서 사업을 기획,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사찰(포교원 포함)은 지역복지활동의 거점이 될 수도 있으며 직접적으로 지역주민과 마주하는 사회복지의 최전방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현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탈시설화현상과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rgration)에 기초한 공사(公私)의 협력적인 활동에

의해 가정이나 지역에서 실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 되었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선별적이고 시혜적이라 한다면 앞으로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보편적인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지역복지체계에 중심이 되는 개별사회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호란 인간이 최대한의 자립을 성취하며,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개입과 지지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노화나 정신지체, 신체장애 등의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가정적인 환경의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 즉 단기보호, 주간보호, 그룹홈 등의 시설에서 자신의 지역의 정서와 이질적이지 않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역복지 활동의 거점을 만들어 그것을 지원할 네트워크 형성이 긴급한 지역복지의 사안으로 대두된다. 이에 대하여 이사카와도카쿠(石川到覺)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원이 주민의 생활향상이나 생노병사 등의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문제에 대한 지원활동으로서 지역복지의 실천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지역활동의 거점인 지역활동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인생문제 등을 포함한 개별상담이나, 지역주민의 각 세대간의 집단 활동의 지원과 지역조직에의 조언 및 지역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장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대상과 영역에서 공헌 할 수 있다.⁴⁴⁾

상기 내용은 첫째, 개별상담에 의한 원조기능(casework)과 사원이용자

44) 이사카와도카쿠(石川到覺) (1991). pp.304~306, 재인용.

의 집단원조기능(groupwork), 둘째로 지역조직화 원조기능(community)과 셋째로 사원거점의 운영관리기능(administration)의 기능적 측면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까지 관습적으로 행해 왔던 보시행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원조기능 방법이나 기술을 도입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란 지역주민의 표준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 민간단체가 협동하여 소득보장·보건의료·교육 및 문화 등 일반 공공정책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대체하거나 보충하여 개별적, 종합적, 조직적으로 원조를 시행하는 지역정책과 활동을 말한다.⁴⁵⁾

이러한 지역복지의 기능 중에 사원은 종교적인 사회통합기능과 개인의 상담과 정신적인 안정감 지원, 그리고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원이나 포교원에서는 상기한 역할을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제공 할 수 있다. 일례로 동남아시아 계통이 대부분인 결혼이주여성들에 종교적 안식처를 제공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을 하는 종교행사를 시전하고, 사원을 개방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실과 휴게실을 만들 수 있다.

상담이나 그룹웍 등의 전문적인 사회복지 기술이 부재하다면, 기존에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사업을 실시 할 수도 있다. 물론 전체 종단에서의 복지인식과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이해가 공유된다면 상담실, 휴게쉼터 등의 사업을 수행함은 지역복지 공동체로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불교의 모든 제종단이 참여한다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지만, 여의치 않다면, 일단은 가장 큰 불교종단인 조계종에서의 지역교구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말사(末寺)와 산재한 포교원 등을 복지현장의 전방에 배치하여

45) 권경임(2009) p.319.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조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불교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양성과 배출이 그 선행조건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종교단체로서 사찰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 등을 조직화, 체계화 하여(거사림회, 청년회 등의 신도조직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 교육, 상담교육, 다문화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한다면) 다문화가정의 위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지역밀착형의 자연스러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불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흔히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이라는 문구에 잘 함축되어 있다고 한다.

상구보리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구하고, 수행하는 것이며, 하화중생이란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일을 말한다. 붓다의 가장 큰 관심이 고통 받는 중생의 구제이고, 중생의 구제야말로 곧 ‘깨달음’이라는 이치였다고 보고 있다. 깨달음과 중생구제, 그 어느쪽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인가 실천의 종교인가에 대한 입장으로써, 출가자인가 재가자인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일차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극히 실천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붓다의 가르침의 특징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실천을 行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⁴⁶⁾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인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문화권의 형성과 확인이라는 현상을 피부로 느끼는 현상에서 세계 속의 세계인으로 살고 있다. 세계화는 세계의 많은 지역문화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세계는 점차 축소되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이질적인 요소가 점차 동일한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으로만 존재하던 이주민을 이제는 함께할 ‘우리’라는 공동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는 한국불교에 있어 지구촌 모든 민족과 인종을 불교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의 인간평등이념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의 자국민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

46) 박광준(2010) p.215.

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의 문제에 대하여 간과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와 불교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불교계는 소외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할 때이다.

따라서 불교계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을 향한 한국사회의 시선이 ‘독특한 이방인’이 아닌 ‘옆집 이웃’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계가 먼저 이들과 손을 맞잡는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는 불교계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닌 단지 형식적인 힘의 집단으로 보고 세속화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해체방지의 불교사회 복지실천방안에 대하여 내린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불교 제종단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생명존중과 연기법을 기본으로 하는 불교사회복지라는 틀 안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비행은 여타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비해 중하면 중하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와 지원을 위해선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은 기본이다.

그 실천적인 방안으로 종단복지재단 산하의 다문화가정 전문 사업부서 내지는 전문지원사업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적인 지원정책과 복지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도시와 지방,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타종교에 비해 전국적인 교구, 말사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불교 제종단의 다문화관련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한층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곧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 탁아, 취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지역복지센터의 건립과 확대가 필요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불교전문복지인력의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불교 제종단의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의 틀을 사회현장 실태에 맞게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사회복지란 복전을 일구는 것이고, 연기법 내에 있는 자비행의 실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교계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외적인 관련 사업의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실천방안으로 종단학교인 동국대학교에 불교사회복지학과의 설립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전문가의 양성과 배출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문화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정기적인 다문화가정 관련 소식지 발행, 최소 1년에 1회 이상의 사업운영보고서 발간과 세미나 개최,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들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불교사회복지계의 다문화가정 전담 사회복지인력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다문화전담 인력은 불교사회복지 뿐 아닌 다문화사회의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당위성을 갖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불교관련 복지시설 및 사업체 간의 캠페인 공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불교계의 복지시설과 민간 사업체가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다문화가정 이혼예방 관련 사업의 기금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일리지제나 포인트제를 응용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며 ‘다문화가정 한식구되기’라는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전 국

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기획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찰 복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그 실천을 들 수 있다. 지역의 사찰(포교원 포함)은 지역복지활동의 거점이 될 수도 있으며 직접적으로 지역민과, 결혼이주여성들과 마주하는 사회복지 최전방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종교적인 안식처 제공 또는 ‘수다방’과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휴게쉼터와 관련 상담실의 운영만으로도 지역밀착형의 자연스러운 불교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지역교구사찰과 말사 등의 종단체계를 이용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직하는 것도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모쪼록 이역만리 타향에서 배우자와 그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내침을 당하는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자비행이 연기법의 실상(實像)이 되고 불교사회복지실천에 중요한 포교 방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김선근(2005), 『인도정통철학과 대승불교』. 동국대학교출판부.
- 권경임(2000), 『불교사회복지 실천론』, 나남출판.
- _____ (2004), 『불교사회복지 실천론』. 학지사.
- _____ (2009), 『현대불교사회복지론』.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범수 외(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_____ 외(2008),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선옥 외(2009),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도서출판 동녘.
- 김영기(2005), 『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 출판부.
- 김오남(2008), 『결혼이민자 가족의 이해』. 집문당.
- 김은미 외(2009), 『다문화 사회 한국』. 나남.
- 김현미(2005),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하나의 문화.
- 박광준(2010),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 한길사.
- 박정은(2007), 『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 일지사.
- 설동훈(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출판부.
- 설동훈 외(2002),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안경식 외(2008),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안옥선(2008), 『불교와 인권』. 불교시대사.
- 양정섭(2009), 『다문화의 이해(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 양상)』. 경진문화.
- 오경석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도서출판 한울.

- 오영교(2009), 『불교학개론』. 동국대학교출판부.
- 이건복(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도서출판 동녘.
- 장미영 외(2008), 『다문화사회 바로서기』, 글솟대.
- _____외(2009), 『다문화 콘서트 이해와 소통을 위한 현장 연구』. 신아출판사.
- 전경수 외(2008), 『혼혈에서 다문화론』. 일지사.
- 정혜원(2009), 『다문화 가정의 건강실태』. 도서출판 박문사.

<학술논문>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미·양옥경·이해영(2007), 『서울의 다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소통과 적용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남지숙(1987), “서울시 화교의 지리학적 고찰”,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 논문.
- 문경희(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6집3호.
- 변화순 외(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병진(2005), “아쇼카왕의 복지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학위논문.
- 설동훈(2005),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발제문.
- 설동훈(2005),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

출판부.

- 설동훈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자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 한건수 · 이란주(2003), “국내거주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양옥경(2007),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시정연.
- 오경석(2007), “다문화와 지역사회”, 시민사회지도자아카데미 발제문, 안산의제 21.
- 유진이 · 이재호(2007), “다문화가족 정책지원을 위한 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센터 춘계학술대회.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유진이외(2007), “다문화가족기관 및 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연구보고서.
- 윤여상(2006), “국내북한 이탈주민 문제와 적응실태”. 북한통권. 415.
- 이금연(2001), “국내여성 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이영옥(2007), “국제결혼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방안; 동남아 여성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이인경.(2007),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이주여성의 삶”, 『여성연구 논집』 제18집.
- 이재정(1993), “한국의 화교거주지 연구”, 경희대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현종(1967), “구한말 외국인 거주지의 종별과 성격”, 『진단학보』
- 정보미(2008),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고찰 ; 결혼이주 가정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논문.
- 조권중(2002), “서울거주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연

- 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외(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조사. 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희정(1986), “제한화교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상명대학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운선(2007.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 연구』 제46권1호.

2. 번역문헌

- 김미숙외 역(2000),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저. Giddens, A.(1997). *Sociology (3rd ed.)*. London ; Polity Press.
- 모경환외 역. 다문화교육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저. Banks, J.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 오인영 역(1996),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한계 논쟁』. 서울; 도서출판 삼인. 저 Nussbaum, M. and Cohen, J.
- 윤진 역(2008),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 저. Marco Martiniello(마르코 마르티니엘로)
- 천혜정의 역(2009),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의 가족』. (주)시그마프레스. 저. Bron B. Ingoldsby, Suzanna. D. Smith.
- 한인영외 역(2001), 『위기개입』. 나눔의집. 저. James, R. K., & Gilliland, B. E. (2001).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4th ed.)*. Thomson Learning..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8),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양서원.
저. Eun Sook Lee Zeilfelder(은숙 리자엘펠더).

3. 외국문헌

石川到覺. (1991), “社會福祉と 寺院の 役割”, 『佛教の 人間學』, 大正大
學, 東京.

Dunham, A.(1970), *The New Community Organization*. New York;
Thomas Y. Crowell Co.

Glazer, N.(1997), *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 Harvard Press.

Hollinger, D. A.(2006), *Postethnic America; Beyond Multiculturalism*.
perseus Books.

Laguerre, M. S.(2004), *Urban Multiculturalism and Globalization in
New York city*, Macmillan.

Narshall, T. H.(1963), *Sociology at the Crossroads*. London;
Heinemann..

Sue, D. W.(2006),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wiley & Sons,
Inc.

Romanyshin, J. M.(1971), *Social welfare, Charity to Justice*. New
york: Random House.

4. 기타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3), “기지춘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김소연(2009.6.8), 한겨레신문.

법무부(2005), “출입국관리국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법무부.

_____(2006), “외국인 정책위원회 참고자료”

_____ (2008), “200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2006), “외국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2005),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_____ 가족정책팀(2006), “다문화가족 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_____ (2007),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보도자료.

_____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삶, 그리고 인권: 2006-2009 상담실 적 보고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제74회 국정과제회의(2006).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보도자료.

통계청(2006), “2005년 혼인 이혼 통계 결과 보고서”

_____ (2009),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_____ (2010), “2009년 1-12월 통계보고”

_____ (2010), “2009년 이혼통계 결과”

행정안전부(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실태조사 결과”, 지방행정국.

5. 기타 사이트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안산이주민센터 홈페이지, <http://www.migrant.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다누리. DANURI, <http://liveinkorea.mogef.go.kr>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wm1366.or.kr>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http://mfsc.familynet.or.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ABSTRACT

A Study on Supporting Measures by Buddhism Social Welfare for Multicultural Family

Park, Seon Ki

Department of Buddhist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In the 21th century, now people move and migrate among countries enough not to seem unfamiliar with a word, *global village*, at all. The days have gone when we were proud of so-called Pure-Bloodism and ethnically homogeneous mythology, and our society has moved into a new epoch when people are living together with heterogeneous and multiethnic population since we met a turning point in the 19th century. According to the report by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the UN, in 2005, it was estimated that over two million foreigners were staying legally or illegally in Korea. Additional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reported that immigrants including ones staying for a short time were 1,000,254, exceeding one million people in August 2007. According to Journal of Statistics for Immigration Bureau, the total number of aliens including both legal and illegal ones is 1,180,598 in March 2010.

In this situation, the issues related to married immigrants in Korea are being frequently talked about. The family and social problems that they have such as adaptation to society, children's education, family discord and, accordingly, an increase in the divorce rate and so on are being outstandingly caused. This problematic situation does not just belong to relative individuals or family member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our country and society are responsible for that, and it is obvious that the social problems from the destroyed multicultural families are likely to create chronic problems in Korean society.

Even in such a situation in Korea, except for only a very small minority of monks and Buddhism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t is true that Korean Buddhist temple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Buddhism Social Welfare are still oblivious to the problems relevant to multicultural families.

What is the aim of Buddhism? Frequently speaking, 'Sanggubori Hahwajungsaeng' has connotations of it.

Sanggubori means the pursuit of wisdom and asceticism for enlightenment, Hahwajungsaeng does edification and enlightenment of mankind. Buddha's greatest concern is to save suffering humankind, and that is thought to mean the ways of the enlightenment.

Between enlightenment and salvation for all people, the stance on which one should be more highly regarded, or the stance on which category Buddhism falls into between enlightenment and practice of religion can be different in Buddhist sects. Also, it varies between lay people and monk. However, the answer to what is the primary aim is that at least teachings of Buddha are very practical. Buddha's

teachings do mean not to realize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people happy, but to practice the ways that make people happy.

There is a limit possibly because it is not long for Korean Buddhist sects to set an aim of practicing Buddhist saint(Bosal)'s path to enlightenment based on social welfare as charity. Nevertheless,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provided with support and Buddhist social welfare service.

At least, support as social welfare service, based on shared philosophy such as denial of class and classification of social status and ancestry makeup, respect for life of all living creatures as well as human beings and understanding of every existence of the world formed by cause and effect, should be offered to multicultural families.